

# 전라북도장애인육상연맹 임원 결격사유

## 제12조(임원의 결격 사유)

-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전북장애인육상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.
-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북장애인육상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2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3. 국민체육진흥법 2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 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 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  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  5. 국회위원
  6.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